

보도시점 (전매체) 3. 26.(화)
국무회의 종료 시점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 중소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부처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3.26) → **시행 (3.29)**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2.23~4.3) → 4월중 시행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효과와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2.15)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 (3.11) 장관 주재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리플렛)과 이미지(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짧은(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담당자	서기관	하유경 (044-204-7867)
			주무관	편성진 (044-204-7831)
		책임자	과 장	마용재 (044-215-5170)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석상훈 (044-215-5171)
			주무관	김도연 (044-215-5176)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공연법)	책임자	과 장	박소정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3-2738)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비디오법)	책임자	과 장	김지희 (044-203-2431)
		담당자	사무관	이초룡 (044-203-2432) 김하정 (044-203-2436)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법)	책임자	과 장	이영민 (044-203-2441)
		담당자	사무관	이장우 (044-203-2446)
	대중문화산업과 (음악산업법)	책임자	과 장	김혜수 (044-203-2461)
		담당자	사무관	최수진 (044-203-2464)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현경 (02-2100-6291)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2-2100-6292)
담당 부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책임자	법제관	서장원 (044-200-6687)
		담당자	사무관	이다은 (044-200-6691)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안소연 (043-719-2032)
담당 부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강태영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참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 법령 개요

법령 (분야/대상)	개정 주요내용 (3.29 시행)
<p>청 소 년 보 호 법 시 행 령 제 4 4 조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법령 위반으로 이득을 취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사유 확대 * (기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 → (개정) 기존 + 신분확인·폭행협박 증빙(영상 등) 有
<p>식 품 위 생 법 시 행 령 제 5 2 조 (주류/식품접객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사유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p>식 품 위 생 법 시 행 규 칙 별 표 2 3 (주류/식품접객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현행)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 4월중 시행
<p>담 배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1 1 조 (담 배 / 소 매 업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사유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현행)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p>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출입시간객실 / 노래연습장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사유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10일→ 7일)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현행) 1차 적발시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 보호자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 출입 (현행)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p>게 임 산 업 법 시 행 규 칙 제26조, 별표 5 (게임물/게임시설제공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면제규정 신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3.22 시행